

---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서

(제46조 ‘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’ 관련)

---

2016. 8. 18

## □ 현황

- (현행)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, 재산세 50%감면 ('16.12.31까지 적용)
- (개정안)
  - 일몰기한 연장 : '16.12.31까지 → '19.12.31까지
  - 취득세·재산세 감면율 축소 : 50% → 25%
  - 재산세 감면기간 한정 : 매년 감면 → 최초 5년간만 감면

## □ 업계의견

-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려면,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필수, 중견기업(제조업)의 경우 53.5%<sup>1)</sup>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 기술개발
- 중소·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시 비용과 리스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, 현재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으로 인해 투자애로가 더욱 심화
-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구조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
- 본 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,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던 제도인 만큼, 감면율 축소는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
  - 또한, 연구성과를 내고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

1) 중소기업청,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'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', 2016.5

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, 최초 5년간만 재산세 감면허용은  
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

- 이에,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

## □ 건의사항

- 현행 유지(취득세·재산세 50% 감면, 재산세 매년 감면)